

국 민 안 전 처

훈계요구·통보

제 목 운행정지 승강기 관리 등 부적정

기 관 명 부산광역시, 북구

훈계대상자 북구 ○○과 지방○○○○ ○○○

내 용

1. 운행정지 승강기 관리 부적정

지방○○○○ ○○○은 2017. 2. 3.부터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북구 ○○과에서 승강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승강기가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승강기 관리주체는 발급받은 표지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부착하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운행정지 사유와 운행정지 기간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북구에서는 2017. 2. 21. 정기 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부산광역시 북구 ○○대로 ○○○에 위치한 ○○석유의 승객용 승강기에 대해 2017. 2. 21. 운행정지명령을 한 이후, 운행정지 표지를 곧바로 붙여 해당 승강기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하나, 감사기간 중 현장을 방문한 2017. 3. 15.까지 운행정지 표지를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발급하지 않아 현장방문 당시 불합격한 승강기의 전원이 켜진 상태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방치하였다.

2.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미통보 및 승강기 관리교육 미이수 등 관리 부적정

「승강기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⁵⁵⁾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위임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55) 「승강기법 시행규칙」 제24조의3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1.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의 고장·수리 등에 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사항
4. 승강기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시 사고 및 고장 보고에 관한 사항
6.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의 조작에 관한 사항

그러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에 대한 의무통보 규정이 없고 시·도 또한 국가승강기정보센터를 통해서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통보여부 및 승강기 관리교육 이수여부에 대해 확인은 가능하나 확인을 해야할 의무 규정이 없어, 부산광역시 중구 등 14개 구·군의 승강기 관리주체 548명이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통보를 하지 않았고 84명이 승강기 관리교육을 미 이수 하였으나 14개 구·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

[통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할지역사무소와 협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조기에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불합격 승강기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하는 즉시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해서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등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